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24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허 훈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경훈,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춘선,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원형, 이은림,
임종국, 장태용, 최진혁,
홍국표, 황철규 의원(26
명)

1. 제안이유

-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도시화를 이룬 서울의 도시화 경험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국제 개발협력 이행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또한, 최근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제 개발 관련 업무 범위를 키워 나가고 있음
- 이에,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서울의 도시 개발 및 운영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 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를 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 설정 및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7조).

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부문”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

2. 시 국제교류 지역 이외의 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3. 예기치 못한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 사업
4.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5. 전문가 파견 및 기술협력 사업
6. 인도적지원
7.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8. 해외도시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
9. 해외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국제개발협력에 기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부문 등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 제6조(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 제7조(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및 제9조(지원)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경제정책실)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3조, 제6조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붙임1)	289,200
제7조	국제개발협력지역 교류협력행사(붙임2)	183,000
제9조	국제개발협력 전담조직 운영(붙임3)	1,716,499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1] 2024년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해외도시 및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대상 정책공유

- 도시 간 교류를 위한 정책발표, 사업발굴 및 추진 시 관련분야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및 현장 시찰 지원,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 공동 모색, 다자개발기구 연차 총회 등 해외 개최 정책공유 행사 참가를 통한 서울시 정책 홍보 및 해외 네트워크 기반 강화
- 해외도시 및 다자개발기구와의 MOU 체결을 통한 사업 추진 기반 마련(협력MOU 체결식 및 정책공유 세미나 개최로 도시 간 도시정보 및 정책공유, 공동협력을 위한 액션플랜 마련, 관련분야 후속 사업 발굴 논의 추진)

○ 국제개발협력 사업 홍보 콘텐츠 제작

- 국제개발협력 사업 홍보 콘텐츠 제작(영상, 브로슈어)을 통한 사업 기반 강화

○ 민관협력 포럼 개최

- 서울시정 가치를 공유하는 ODA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현지 워크숍

-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및 해외도시 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 파악 등 효율적 사업 수행 추진

[붙임 2] 2024년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지역 교류협력행사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의 주요내용
 - 천선우호도시 기념 행사 개최
 - 지역별 교류협력 행사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붙임 3] 2024년 국제개발협력 전담조직 운영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국제개발협력 전담조직 운영

- 조직명 :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
- 조직형태 : 1단 1부 8명 (정원 12/현원 8)
- 역 할 : 사업정보 수집, 기획 및 제안, 사업수주, 민간과 공동 사업 수행 등
- 운 영 : 공공위탁(서울주택도시공사)

○ 2024년도 사업계획

-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통한 서울 위상 제고 및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22~25)
- 에콰도르 과야킬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22~24)
- 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22~24)
- 필리핀 마카티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 구축사업 PMC 용역(23~25)
- 캄보디아 프놈펜 기후변화대응 관련 시민교육 및 폐기물처리 역량강화(24~26)
-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스마트시티 조직 및 기술강화를 위한 개발전략개선 지원(개발중)
- 세계은행 신탁기금 사업(개발중)
- 키르기즈스탄, 인도, 페루,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대상 자체발굴사업(개발중)
- 해외도시 공무원,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대상 서울시 정책 공유
- 국제개발협력 자문단 운영(14인)